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복잡·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던 것을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및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안 제43조)

-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라. 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 등 (안 제45조)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마. 첨단소방장비 지정·시범운영 및 취소·철회 절차 등 마련(안 제46조~ 제50조)

-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소방장비 성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를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소방청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소속의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방장비를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

제1조의3(소방장비운용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제1조의2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 이에 준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법 제41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철회, 법 제45조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3조 및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이하 “긴급정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장비정비센터

2.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

3. 소방장비 및 재난대응 분야의 전문가

② 소방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이 이루

어진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의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정비지원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에게 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 기관·전문가의 참여는 사전 협약 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지원단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및 부품비·운송비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39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요청한 경우
2. 무상양여 대상 소방장비의 현지 운용능력 및 유지관리 인프라 확보 여부
3. 소방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연계성 및 소방 장비·기술 교류협력 실적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해외에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11장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로

하고,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지정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로서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적용되고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장비로 한다.

1.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무인체계, 디지털 통신기술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소방장비에 비해 성능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된 장비

2. 기존 소방장비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비로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 분야별 세부 지표와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첨단소방장비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방장비의 제조·판매·개발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장비의 활용 및 시범운영이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이하“소방기관”이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장비의 현장 활용성 및 시범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소방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장비의 활용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검토의견서의 제출을 관련 소방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소방장비 대상을 지정한다.

제48조(시범운영 및 현장도입 결정) ① 소방청장은 시범운영할 소방기관, 기간 및 운영계획을 정하여 해당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 결과 성능 및 현장 적응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급확대가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지정 취소 및 철회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철회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은 자 및 해당 장비를 시범운영 중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의 세부적인 기준, 위원회 심의 전 사전조사의 방법, 제출서류 및 지정서 반납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0조(성능평가의 수행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해 성능평가 및 실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는 첨단소방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면검토, 기술적 검증 및 실물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증평가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첨단소방장비를 재난현장 적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직접 시험 또는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기관에 평가 업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의 경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실증평가의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첨단소방장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 및 실증평가

의 세부기준, 배점,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첨단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으로 한다.

“제48조”를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8조)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53조(중전의 제46조) 중 “법 제42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54조(중전의 제47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조 제1항제4호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같은조 제2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중전의 제48조 앞의 “제11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소방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u> <u>1. 소방청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u> <u>2.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소속의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u> <u>3. 그 밖에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기관</u>
<u>《신 설》</u>	<u>제1조의3(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u> <u>1. 소방공무원</u> <u>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u>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u>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u> 3.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제1조의2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 이에 준하는 사람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에 관한 사항</u> 4. <u>법 제40조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법 제41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철회, 법 제45조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3조(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이하 “긴급정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장비정비센터</u> <u>2.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u> <u>3. 소방장비 및 재난대응 분야의 전문가</u> <u>② 소방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이 이루어진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의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정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u> <u>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에게 긴급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전문가의 참여는 사전 협약 또는 본인</u>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생략) 《신 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 지원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부품비·운송비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현행 제43조와 같음) 제45조(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무상양여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요청한 경우 2. 무상양여 대상 소방장비의 현지 운용능력 및 유지관리 인프라 확보 여부 3. 소방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연계성 및 소방 장비·기술 교류협력 실적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해외에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소

현행	개정안
제10장 보칙 《신 설》	<u>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 상국가를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u> 제10장 첨단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6조(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대상 및 기 준)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로서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적용되고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장비로 한다. 1.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무인체계, 디지털 통신기술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소방장비에 비해 성능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된 장비 2. 기존 소방장비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비로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세부 지표와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7조(첨단소방장비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방장
《신 설》	

현행	개정안
《신 설》	비의 제조·판매·개발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장비의 활용 및 시범운영이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장비의 현장 활용성 및 시범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소방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장비의 활용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검토의견서의 제출을 관련 소방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소방장비 대상을 지정한다. 제48조(시범운영 및 현장도입 결정) ① 소방청장은 시범운영할 소방기관, 기간 및 운용계획을 정하여 해당 소방

현행	개정안
《신설》	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 결과 성능 및 현장 적응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급확대가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지정 취소 및 철회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철회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은 자 및 해당 장비를 시범운영 중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③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의 세부적인 기준, 위원회 심의 전 사전조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반납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0조(성능평가의 수행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해 성능평가 및 실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는 첨단소방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면검토, 기술적 검증 및 실물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증평가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첨단소방장비를 재난현장 적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직접 시험 또는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기관에 평가 업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의 경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 행	개 정 안
	2. 실증평가의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첨단소방장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 및 실증평가의 세부기준, 배점,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u>제44조·제45조</u> (생 략) <u>제46조</u>(수수료) <u>법 제42조</u>에 따른 업무 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u>제47조</u>(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시·도지사 <u>법 제44조제1항</u>에 따라 른 업무 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 3. (생 략) 4. <u>법 제40조제2항</u>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u>법 제44조제2항</u>에 따라	<u>제11장 보칙</u> <u>제51조·제52조</u> (현행 제44조 및 제45조와 같음) <u>제53조</u>(수수료) <u>법 제49조</u>에 ----- ---. <u>제54조</u>(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u>법 제51조제1항</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47조제2항</u>----- ----- ② ----- <u>법 제51조제2항</u> -----

현행	개정안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u>제11장 벌칙</u> <u>〈신 설〉</u> <u>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u> <u>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6과 같다.	----- -----. <u>〈삭 제〉</u> <u>제12장 벌칙</u> <u>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u> <u>1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55